

25

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(법 §75의4, 영 §35-5)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p>□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감면</p> <p>○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- 취득세 면제</p> <p>○ 감면대상 업종 -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 (법§58-3④ 인용)</p> <p>○ 사업장 이전의 범위 - 과밀억제권역에서 반환공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</p> <p>○ (신설)</p> <p>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</p>	<p>□ 감면 연장 및 재설계 등</p> <p>○ (현행과 같음)</p> <p>○ 감면대상 업종(영§35-5) - 별표2 신설</p> <p>○ 사업장 이전의 범위(영§35-5) - <u>수도권</u>에서 반환공여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</p> <p>○ <u>창업의 의미 명확화</u> -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* 규정 * 합병·분할, 현물출자, 법인전환 등</p> <p>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</p>

□ 개정내용

-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각종 규제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 연장
- ‘창업중소기업’ 감면과 그 취지가 상이하고, 반환공여구역 등은 정책적으로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므로, 감면 취지에 맞춘 감면 업종 신설
※ 기존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 외 야영장업, 의료업, 노인복지시설 등 추가